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

1. 개정이유

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,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접수·관리업무의 위탁 (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)

-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

나.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(안 제46조의6 신설)

- 우수조달물품 등록,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

다. 제도 명칭 명확화(안 제46조의3 제1항)

- ‘우수 물류신기술등’을 ‘우수 물류신기술’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3의 명칭 중에 “우수 물류신기술등”을 “우수 물류신기술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3 제1항 중 “우수한 물류신기술등(이하 “우수 물류신기술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우수 물류신기술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3 제2항 중 “물류신기술등”을 “물류신기술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6(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) ①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수된 제품의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6를 제46조의7로 한다.

제51조제2항제1호 중 “제46조의5”을 “제46조의6”로, “공고”을 “공고, 적용제품 확인”로 한다.

제51조제2항제2호 중 “제46조의6제1항제3호”을 “제46조의7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51조제2항제3호 중 “제46조의6제1항제4호”을 “제46조의7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5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의3(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)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(이하 “우수 물류신기술등”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	제46조의3(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) ① ----- 우수 물류신기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.	② ----- 물류신기술----- ----- ----- -----
<신설>	제46조의6(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) ①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수된 제품의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제46조의6 (생략)	제46조의7 (현행 제46조의6과 같음)

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	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, 심사, 의견 요청·청취 및 공고 업무	1. ----- 제46조의6----- ----- ----- 공고, 적용제품 확인 ----- -----
2.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	2. 제46조의7제1항제3호----- -----
3.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	3. 제46조의7제1항제4호----- -----
<신설>	4.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